

별첨 1

제조업 세부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분류체계(제10차 기준) 대분류 'C' 제조업 전체			
중분류 (총25개)		소분류 (총85개)	
코드	(10~34) 항목명	코드	(101~340) 항목명
10	식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5	낙농제품 및 식용 병과류 제조업
		106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108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111	알코올 음료 제조업
		112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20	담배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131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132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33	편조 원단 제조업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41	봉제의복 제조업
		142	모피제품 제조업
		143	편조의복 제조업
		144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1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52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161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62	나무제품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63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81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182	기록매체 복제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1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20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3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32	내화,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3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41	1차 철강 제조업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	금속 주조업
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52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 부품 제조업
		263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5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266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273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274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4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 신품 부품 제조업
		304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2	철도장비 제조업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319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20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331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332	악기 제조업
		333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4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9	그 외 기타 제품 제조업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별첨 2**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리스트(별도 첨부 예정)**

※ 신청 누리집에 별도 첨부 예정. 이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

별첨 3**빈일자리 업종대상 기업리스트(별도 첨부 예정)**

※ 신청 누리집에 대상기업 리스트 별도 첨부 예정

연번	빈일자리 업종	소관부처	대상기업	비고	
1	조선업 (제조)	산업부	[참조]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 분류체계(제10차 기준) 대분류 C 제조업에 포함	빈일자 리 해소방 안 1차 (‘23.3월)	
2	뿌리산업 (제조)	산업부			
3	물류운송업	국토부	-		
4	보건복지업	복지부	-		
5	음식점업	농식품부	2개 대상기업		
6	농업	농식품부	451개 대상기업		
7	건설업	국토부	-		
8	해운업	해수부	952개 대상기업		빈일자 리 해소방 안 2차 (‘23.7월)
9	수산업	해수부	49개 대상기업		
10	자원순환업	환경부	-		

별첨 4**「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우선지원대상기업”**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200명 이하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00명 이하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그 지정된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그 사업주가 하는 모든 사업에서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근로자 수(건설업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는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0.5명으로 하여 산정하고,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2.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산업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산업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임금총액, 매출액 순으로 그 기준을 적용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보험관계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참여 청년>

【서식 1】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신청서(1차 지원금 신청서)	54
【서식 1-1】 지원제외 청년 확인서	55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56
【참고】 표준근로계약서(예시)	57
【서식 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서(2차)	56
【서식 3】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57
【서식 4】 근속 승계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58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

【서식 5】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운영기관 지정 신청서	61
【서식 5-1】 일반현황	62
【서식 5-2】 사업계획서	64
【서식 6】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표	66
【서식 6-1】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운영기관 선정 심사기준	67
【서식 7】 표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위탁운영 약정서	68
【서식 7-1】 위탁운영 약정서(컨소시엄)	74
【서식 8】 위탁 사업규모 변경 신청서	81
【서식 9】 운영기관 위탁사업비 교부신청서	82
【서식 10】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청년 모니터링표	83
【서식 10-1】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청년 점검표	84
【서식 11】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운영기관 운영실태 점검표 ...	85
【서식 12】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검토 보고서	88
【서식 13】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88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청년 확인서

본인은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참여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가입 제외 또는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지원 제외 청년	해당없음	해당있음
①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자녀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③	인력 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 용역 근로자 등 간접 고용형태로채용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④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 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⑤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자로 채용된 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⑥	일자리 채용 청년취업지원금을 수령했던 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⑦	근속의 중단이 있는 자 - 휴업·휴직(사업장 사정), 휴직(병가 등 근로사 사정), 노조전임자, 기타 등 근속 중단 시 모두 해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9① 및 별지 제22호의8 (단 :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가지 사유만 예외적으로 근속 중단이 있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의 지원 요건 및 제외 요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상단의 “확인서” 를 작성합니다. 만약 이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지원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지급받은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은 부정수급이 아닌 한 반환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없음을 안내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청년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사업』 대상기업이 채용한 청년의 지원 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사업』 신청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소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 정보전산망 관리 및 기존 정보전산망과의 연계,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 기간, 지원금액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사업』 신청청년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및 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의견수렴 및 추가 정책 안내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일자리채움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서명 또는 인)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년 월 일

○○ 운영기관 장 귀하

■ [서식 2]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서(2차)

지원금 지급결정 통보는 지원금 지급 사실로 대신함을 신청합니다.

※ 에는 해당란에 "√" 표시

접수번호 ○○기관 - 20 - 0000 접수일자

신청인 정보	성 명	전 화 번 호
	주 민 등 록 번 호	이 메 일
	주 소	

사업장 정보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사 업 장 주 소	
	업 종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빈일자리 업종 * 음식업점, 농업, 해운업, 수산업
	사 업 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①피보험자수 5인 이상 <input type="checkbox"/> 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의 우선지원대상 기업

※①,② 모두 충족 요건

지원요건	채 용 일	20 년 월 일	정 규 직 채 용 일 (정규직 전환자)	20 년 월 일
	근 속 기 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대상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근속 중임 ※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제외한 휴업·휴직 등은 근속이라 볼 수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9① 및 별지 제22호의8 참조>		

※신청자가 아닌 타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기입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청자 계좌번호 () 은행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시행지침」에 따라 6개월 근속에 대한 2차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 본인은 「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 지원 및 제외 요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만약 이상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혹은 인)

○○운영기관장 귀하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6개월 근속증빙 자료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등)
-------------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 선람	담당	팀장	과장
			결재 연월일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1. 고용노동부는 빈일자리 업종의 구인·구직 불균형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청년의 임금격차 해소와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채용 청년 지원금 사업」을 통해 우선지원 빈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직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근속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동 사업 지침에 따라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의 청년은 취업 애로청년으로서 지원우대 대상이며,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자 포함), 시도 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수업일수 2/3 출석한 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을 요건으로 지원금을 받던 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
3. 동 사업 참여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청년의 채용일 기준 해당하는 최종 학력사항을 아래 표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졸업	수료	중퇴	휴학	졸업 예정
고등학교					

4.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대(원격대학)·야간대학·대학원 등의 대학에 진학한 자(재학·휴학 중인 경우 및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에 참여중인 경우 포함)는 대학에 재적 중이므로, 고졸 이하 학력이 확정되지 않아 취업애로요건의 '고졸 이하학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청년

(서명 또는 인)